

긴급진단 수급조절제도 폐지위키고 대책은 없나?

“제도 폐지는 안될 말 .. 우린 어찌라고”

1백여명 생산농민 과천청사앞서 수급조절제도 폐지 반대 시위 계약재배와 수매제시행등 생약농업보호 위한 선대책 마련 촉구 시장개방 대비 수입약재 품질검사 절차 및 관세체계정비 시급

지난 7월1일 26개 수급조절 품목중 강황, 목단, 방풍, 치자, 항부자 등 5개 품목의 한약재가 수입개방됨으로서 수급조절품목은 21개 품목으로 축소 조정됐다. 이번 5개품목의 수입개방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앞으로 몰아칠 한약재시장의 완전개방 바람의 전초전”일 뿐이라고 말한다.

지난 99년 규제위 의결결과에 따르면 2001년 까지 수급조절품목을 단계적 품목축소하고 잔존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추진키로 의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수급조절제도의 유지와 고율 관세제도의 동시 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잔존품목에 대한 관세화 추진 의결은 곧 수급조절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생약재배농민 1백여명은 지난 7월13일 세종로 정부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수급조절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제도폐지 여부 놓고 부처간 엇갈린 해석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동 제도의 폐지를 의결한 바 없으며 필요에 따라 관세화를 추진토록 한 것 뿐”이라고 변명하고, 보건복지부는 “수급조절제도와 고율관세부과 제도는 현실적으로 병행될 수 없는 만큼 이는 사실상 수급조절제도 폐지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 농림부는 이에 대해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할 의사가 없고 폐지돼서도 안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했다. 동 의결사항에 대해 부처간 다소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 그러면 서도 농림부는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해 대안을 만드는 게 농림부의 고민”이라고 털어놓음으로서 중국의 WTO 가입이 한약재 시장개방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수급조절제도 폐지반대를 위

한 비상대책위원회 박용재 시장개방 반대는 우리 농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WTO라는 거대한 세계무역질서 속에서 한약재 시장개방이 막을수 없는 경제논리라면 이에대한 정부방침을 명확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조절제 존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중국의 WTO가입이 오는 11월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대로라면 늦어도 내년초 쯤엔 WTO가입국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다. 과연 그같은 상황속에서 국내 수급조절제도의 존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한약담담관실 박상표 사무관은 “중국이 WTO회원국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수급조절품목의 완전개방 또는 수급조절제도의 존폐여부는 이미 복지부의 영향력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후 국내 한약재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해 올 경우 우리로서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구실은 없다”고 말한다. 자칫 통상미찰로 비화될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조절제도의 유지가 사실상 힘겹다는 얘기다.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제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21개 수급조절품목중 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없도록 돼 있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식품으로의 반입이 자유로워 수급조절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식품용 수입약재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21개 수급조절품목 중 16개 품목(구기자, 당귀, 두충, 맥문동, 백출, 산수유, 산약, 오미자, 작약, 지황, 창출, 천

궁, 천마, 하수오, 황기, 황금) 근 위원장은 “한약이 식품용으로 무려 약 1만여톤이나 반입됐다.

우선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난 후면 수입한약재의 폭발적인 증가는 불가피 할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잔존품목에 대한 관세화추진 가능한가?

단계적으로 품목을 축소하고 잔존품목에 대한 관세화추진은 가능한 일일까?

UR농업협정 이후 국제농산물 교역은 관세에 의한 보호만이 인정되는 추세로 향후 효과적인 관세체계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계절관세, 할당관세, 차액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슬라이드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 제도는 국제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제도로서 향후 급격한 수입증대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 최소화과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관세법에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구체적인 시행령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되어온 탄력관세제도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하여 주로 조정관세, 긴급관세 등만을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탄력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기간, 대상품목의 선정 및 관세율산정 등에 있어 제도의 명료성과 객관성 부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활용가능한 탄력관세제도의 효율적 적용방안 및 대상품목 선정방식과 더불어 향후 보다 합리적인 탄력관세제도 정비와 운용으로 상대국간의 통상미찰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한약재의 경우도 관세제도를 잘 활용 국내 생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가격위주로 책정되는 종가세보다는 수량에 의해

결정되는 종량세를 적용한다거나 국내 한약재 수확시기에 반입되는 한약재(식품용 포함)에 대해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계절관세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일정수량까지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율쿼터제”도 있다. 이처럼 관세율의 단계확대에 대한 검토와 수입약재에 대한 세번(HS) 분류체계의 세분화를 통해 국내 생약농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기여도 비중이 작은 한약재의 경우 고율 관세제도의 적용도 그리 쉽지않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엄격한 품질검사체계 실질적 수입제한 효과

국내 생약농업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지고 있는 수급조절제도. 중요한건 제도의 존폐여부를 떠나 국내 생약산업 보호방안이 되는 최대공약수를 추려내는 일이다.

그같은 맥락에서 식품용 및 약재로 반입되는 수입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사체계 확립은 무분별한 수입을 통제하는 보다 현실적인 수입제한조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생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세화체계를 정비하고 수입한약재의 통관시 품질검사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 강화함으로써 수입한약재에 대한 간접적인 수입제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방울토마토에 대해 까다로운 품질검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인 수입제한효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의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과학적인 근거하여 중국산 한약재의 검역을 통한 철저한 통제는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상대

WTO/TBT 협정이란?

무역상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인증절차, 검사제도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함.

따라서 특정국가가 각종 표준, 기술규정, 인증 및 검사제도 등을 국가별로 또는 내외국인간에 차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는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게 TBT협정의 골자다.

GATT체제 발족 이래 무역상기술장벽이 세계 주요 교역국들의 현안과제로 부상됨에 따라 79.4.12 제네바에서 GATT/TBT 협정을 채택함('80.1.1 발효). 이후 '86-'94년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GATT체제가 WTO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동협정이 WTO/TBT협정으로 대체되었음. 2001년 7월 현재 WTO/TBT협정 가입국(WTO회원국)은 141개국임. 우리나라는 '80.10.2 일에 가입했다.

국으로 부터의 저항도 적고, 국민건강과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문제는 중국산 약재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사체계는 WTO/TNT협정에 의해 국산 약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개방압력의 경우가 그같은 예다. 뉴질랜드는 “한국에서 녹용이 건조된 후 절단해 포장 상태로 한약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자국산 녹용을 가공후 포장상태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내산 한약재에 대한 품질유통관리규정은 차후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중요한 대응 근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생약협회 황인구 회장은 “중국산과 비교해 품질이 우수하거나 성분이나 약효가 탁월한 국산 약재를 연구 발굴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고, 생산자단체를 활용 경쟁력있는 약재를 농가에 보급,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방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생약농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고, 더 나아가 생산농민들 스스로도 개방화시대에 대응, 보다 공격적인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문정희)